

이라크전을 통해 본 UN의 무기력과 향후 국제질서의 전망

이장희 (한국외대 법대 학장,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지난 4월 2일에 이라크전 파병안이 시민단체와 다수의 국회의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당당한 대한민국을 약속한 노무현 대통령의 한계와 약소국의 비참함을 실감하면서, 향후 국제질서와 한반도에 미치는 이라크전의 영향을 점검해 본다.



아내고 이라크의 민주화와 이라크 국민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한 것이며, 마지막으로 UN안보리 결의 1441(대량살상무기 개발 의무의 지속적 위반에 대한 중대한 결과 직면)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위의 네 가지 근거는 다음과 같이 전혀 타당성이 없다. 우선 이라크는

미국의 이라크전은 침략행위

우선 국제법적으로 미국의 군사행위는 사전에 UN 안보리의 결의도 없었고, 자위권조치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UN헌장 제2조 3항(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원칙)과 4항(무력사용의 금지)에 배치되는 무력을 사용했다. 즉 타국의 영토보전 및 정치적 독립에 대한 무력사용으로서, UN의 집단적 안보조치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명백하게 침략행위(Agression)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 대 이라크 군사행동의 정당성을 주장한 이유를 요약해 보자. 첫째, 이라크가 9·11 테러리즘을 지원한 배후국가라는 것, 둘째로 이라크는 대량살상 무기를 개발한 나라이고, 셋째로 독재자 후세인을 몰

고, 두 번째로 지금까지 이라크에서 대량살상 무기가 발견된 것이 없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군사적 행동까지는 할 수 없다. 셋째로 민주화를 이유로 타국의 정치적 독립성과 영토적 통합에 대한 무력 공격은 현대 국제법상 결코 허용될 수 없으며, 마지막으로 설사 UN결의 1441을 무시했다고 해도 무력공격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제사회와 한반도에 부정적 영향

이라크 전쟁은 국제법 및 도덕적으로 정당성이 전혀 없다. 비록 이번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했다 하더라도, 이번 전쟁은 국제사회와 한반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명약관화하다. 우선 미국은 21세기

초강대국으로서 세계패권을 장악했다. 특히 세계 2위의 산유국인 이라크뿐만 아니라 네 개의 산유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함으로써 21세기의 세계 경제에 대한 단독 지배권을 획득했다.

둘째, 미국은 이번 전쟁을 계기로 전통적인 우방인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서유럽국가와의 관계를 매우 악화시켜, 그것의 회복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미국은 서유럽 우방들과의 관계 회복 없이는 향후 NATO 운영이나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국제협력과 평화유지기능을 도모하고 정립해 가는 지도국으로서 도덕적 지도력을 확보하기가 매우 힘들 것이다.

셋째, UN안보리 기능은 물론 UN 평화유지기능을 무력화시켰다. 이번 전쟁종결 후 어느 나라가 UN에 분담금을 성실하게 내겠는가. UN의 가장 주요한 기능이 국제평화유지인데, 무력사용으로 국제평화를 해친 미국을 응징하지는 못할지언정 비판 권고안 정도도 결의하지 못하는 UN의 권위는 땅에 떨어진 것이다.

넷째, 이라크 전쟁 이후 국제사회에서 정의는 사라지고, 노골적으로 과거의 제국주의시대에 횡횡하던 약육강식의 시대가 다시 돌아왔다. 힘센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무력으로 위협하여 정치적 독립과 영토 통합을 훼손하고, 지하자원을 침탈하는 모습이 재현된 것이다. 이것을 미국이 주도했다.

다섯째, 한국정부의 이라크전 참전은 남북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한국이 이라크 침략전을 방조함으로써 이라크 전쟁 후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행동을 할 때, 어떤 도덕적 명분으로 국제사회를 설득시켜 이것을 막겠는가? 향후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여섯째, 참전은 헌법 위반이고 한국도 침략전을 방조한 나라로 전락했다. **헌법 제5조 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침략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으며 침략전쟁에 참가하지도 않을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 전쟁에 참전을 하기 위해 파병을 하는 것은 바로 이 헌법 규정에 위배되어 위헌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상기의 부정적인 영향을 국제적 차원에서

막을 대책은 없는가?

전쟁의 부정적 영향 극복 방안

국제법적으로 가능한 것은 UN 긴급총회 소집을 통해 미국의 행위를 비판하는 결의를 유도하는 일이다. 이상적인 것은 UN 사무총장이 UN헌장 제99조에 따라 UN안보리 개입을 요구하여, 안보리에서 미국의 이라크전 군사행위는 헌장 제39조에 의한 명백한 침략행위임을 결의하고, UN헌장에 따라 우선 이 전쟁의 즉각적인 종단을 미국과 영국에게 권고(제39조)하고, 다음으로 잠정조치(제40조), 비군사적 제재(제41조) 그리고 군사적 제재의(제42조) 순으로 단계적으로 상응한 제재조치를 취해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에 관한 제재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희박하다.

그래서 총회가 1950년 11월 3일 결의 377(V)로 채택한 [평화를 위한 단결결의](Uniting for Peace)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 조치는 평화에 대한 위협이나 파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가 마비되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 총회가 국제평화의 유지 및 회복을 위하여 군사 및 강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회복 불능의 국제평화유지자, UN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에 버금가는 강한 힘은 국제여론이다. 평화를 갈구하는 전 세계에 있는 평화 관련 종교·시민사회단체는 국제적 평화연대를 구축해 강한 국제여론으로 소속 정부를 압박하여 UN 긴급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패권적 이기주의와 일방주의를 버리지 않는 한, 국제사회는 독일·프랑스·중국·러시아를 한축으로 하는 측과 미·영과 이스라엘이 다른 한축이 되는 체제로 분열될 수 있어, 21세기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분명한 것은 이번 전쟁에 대한 미국의 공식 사과든지 아니면 UN기관의 공식적 비판이 없는 한, 국제평화유지자로서 UN이 제기능을 회복하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